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19.(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6.

나. 제안자 : 김용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6.

라. 상정일자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 3.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용희 의원
- 검토보고 : 윤혜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인력인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역할과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또한, 교육감의 처우개선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복지협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교육복지사의 직무 안정성을 도모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인력인 교육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김용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3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무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천교육복지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노력에 깊이 공감함.
  
  - 먼저, 본 개정안 중 사업의 철학과 대상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안 제2조제1호 신설)한 점과, 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복지협의회에 시의회 교육위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12조 관련)한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평가됨.
  
  -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상위법령의 위임 체계를 벗어나거나, 노사 단체협약 및 교육감의 고유 권한(조직·인사·예산)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자치법규로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첫째,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수당 신설 등) 조항(안 제4조 관련)의 적절성 문제임. 교육복지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현재 임금 등 주요 처우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며, 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조례에 특정 직종만을 위한 자격수당 신설 및 각종 처우 개선을 명시하는 것은, 기 확립된 전국 단위의 노사 교섭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타 교육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예산 편성 및 노무 관련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선발 기준 제한 및 역할 통합(안 제9조 관련)에 관한 사항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전담 인력의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제처 해석(의견 19-0341)에 따르면, 이는 조례가 아닌 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이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여 특정 자격(사회복지사)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고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함.

또한 배치 기관(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따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할을 통합하는 것 역시 현장의 행정 공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 19-0341, 요청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9.11.11.)

### 1. 질의요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립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1헌마25 결정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이하 “교육복지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하 “사업전담인력”이라 함)의 경력기간의 추가 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항, 제7항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판별 기준, 학교의 장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의 수업일수 범위와 그와 같은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관의 범위,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규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서도, 같은 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학교의 선정 및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같은 목적의 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수 및 자문, 같은 목적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촉진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교육감의 권한 또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 및 교육복지규정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복지규정은 비록 그 형식은 교육부의 훈령이나,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는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의 추가 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한 교육복지규정 제13조제2항의 문언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복지규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교육복지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복지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복지규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교육자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16. 의견제시 16-0063, 법제처 2018. 10. 28. 의견제시 18-0207 취지 등 참조).**

- 셋째, 자치법규의 중립성 및 유연성 저해 요소임.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능단체(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직접 명기(안 제12조)하거나,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특정 사업 브랜드 명칭(온이음센터)으로 규정(안 제10조)하는 것은 조례가 갖추어야 할 일반성과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및 명칭 변화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임. 다만, 본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체계와의 충돌, 전국 단위의 노사 교섭 질서 훼손, 그리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 제약 등 교육 현장의 법적·행정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쟁점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제도의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쟁점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정과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이용창, 조현영, 정종혁, 임지훈)

나. 반대(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발의된 원안(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예산 수반 사항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및 집행기관의 인사·조직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당 신설, 자격 기준, 센터 명칭 변경 등의 쟁점 조항을 삭제 및 현행 유지로 조정하여 조례의 안정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정의 규정 유지 (안 제2조)
- 처우개선 사업 등 예산 수반 조항 임의규정화 및 수당 신설 삭제 (안 제4조)
- 교육복지사 선발 자격 및 역할 통합 조항 삭제 (안 제9조)
- 교육복지지원센터 명칭 변경 규정 삭제 (안 제10조제3항)
- 관계자 연수 경비 지원 구체적 명시 삭제 (안 제14조제2항)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4명, 찬성: 4명)

## 8. 기타: 해당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란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마련·시행하여야 한다”를 “마련·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2.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3. 교육복지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 지역사회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③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연계
3. 사업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연수 등)
4.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지원
5. 각종 협의회 등 운영자로서 사업 실무 담당

④ 교육감과 교육장,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복지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온이음센터”란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교육복지 지원 전담기관으로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u>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u>”란 <u>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p> <p>&lt;삭 제&gt;</p>	<p>제2조(정의) ----- ----- -----.</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4조(책무) ①·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추진하여야 한다.</u></p> <p>1. <u>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u></p> <p>2. <u>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u></p>	<p>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u>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신 설>

<신 설>

<신 설>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교육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④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① (생략)

<신설>

②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2.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3. 지역사회 각 기관

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 또는 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③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2.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3. 교육복지 교내(외)

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의 인적·물적 자원  
을 사업에 연계

4.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과의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과 관련한 학  
부모 및 교직원  
에 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는 다음 각 호  
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  
회의 요구를 파악하  
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  
에 연계

3. 사업학교 운영 지  
원(컨설팅, 모니터  
링, 연수 등)

4.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지원

5. 각종 협의회 등 운  
영자로서 사업 실무

협력체계 구축

4. 지역사회 각 기관  
의 인적·물적 자원  
을 사업에 연계

<삭 제>

4. (현행 제3호와 같  
음)

③ (현행과 같음)

담당

④ 교육감과 교육장,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복지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② (생략)

③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해당 시설이 교육복지 연계·협력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생략)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의 역량 제고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④ -----  
-----  
----- 제3항-----  
-----  
-----  
-----.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온이음센터”란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교육복지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  
-----  
----- 하며-----  
-----  
-----  
-----.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직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교육장은 해당 시설이 교육복지 연계·협력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직

<u>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u>	<u>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u> .	<u>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u>
----------------------	---	-----------------------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복지”란 학생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 소외 또는 부적응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정서적·문화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교육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학부모”를 “학부모, 지역사회”로, “운영, 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교육복지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제3항 중 “하고”를 “하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교육복지”를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

7. 사회복지 분야 교수 및 연구원

8.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9.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제14조제2항 중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를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u>&lt;신 설&gt;</u></p> <p>1. ~ 4. (생략)</p> <p>제4조(책무)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u>“교육복지”란 학생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 소외 또는 부적응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정서적·문화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 <u>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u></p> <p>2. <u>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u></p> <p>3. <u>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u></p>

<신 설>

<신 설>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 ① (생 략)
- ②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생 략)
  - 2.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신 설>

- 3. (생 략)

4. 그 밖에 교육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학부모, 지역사회  
-----  
--- 운영
- 3. 교육복지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과의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  
직원에 관한 지원 등

③·④ (생략)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②  
(생략)

③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  
원청에 설치하여 교육복지사 미  
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장  
은 해당 시설이 교육복지 연계  
·협력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지원한다.

제12조(교육복지협의회 구성·운  
영)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  
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1. (생략)

2. 인천광역시청 교육복지 담당

<삭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하며 -----  
-----  
-----  
-----.

제12조(교육복지협의회 구성·운  
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한 교육  
위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 아동·청소년 -----

공무원

3.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7. (생략)

③ (생략)

④ 협의회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⑥ (생략)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생략)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의 역량 제고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사회복지 분야 교수 및 연구원

8.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9.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삭제>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2회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